옥천군공고 제2021-127호

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29일

옥 천 군 수

1. 조 례 명

○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·비용의 발생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, 행정심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선

3. 주요내용

○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공증 요구 삭제(안 제15조)

○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조문 삭(안 제22조)

4. 개정근거

○「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통보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과-2100호(2020.8.31.)

○ 「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 제도 정비 안내」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-899호(2020.9.17.)

5. 의견 제출

○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8일까지 옥천군수(참조 : 자치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lhj84132@korea.kr

2) 주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

3) 팩스 : 043-731-1987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(전화 043-730-31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

○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”를 “체결하여야”로 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협약체결 등) ①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·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 ② (생 략) 제22조(이의신청)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15조(협약체결 등) ① ------- ---------- ------체결하여야 --------- -----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: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　　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 례 안	의　　견